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인사를 소부장경쟁력강화위 위원으로 위촉〉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27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¹⁾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생략)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²⁾,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관계 중앙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는 한편, 위촉직 위원으로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두고 있음³⁾.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위원인 정부위원 11인과 위촉직 위원인 민간위원 14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⁴⁾.

<표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구성

구분		직위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부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위원	당연직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가정보원 원장
	위촉직 (민간위원)	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분		직위
위원	위촉직 (민간위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소부장투자기관협회 협회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KAIST 소재부품장비기술자문단장
		서울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자료: 산업통상부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으로 ①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에 ②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중간생산물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 또는 설비에 관한 산업으로서⁵⁾, 충북 청주(이차전지), 경남 창원(정밀기계), 전북 전주(탄소소재) 등 중소규모 산업단지에 분산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공정 및 기술상 지역 주력산업과 전기·수도 등 지역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2>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리스트

구분	업종	지역	산업단지
제1기 특화단지 (‘21.2. 지정)	종합반도체	경기 용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차전지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아산	천안 제2, 3, 4 일반산업단지,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 제1, 2 테크노밸리
	정밀기계	경남 창원	창원국가산단
	탄소소재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2기 특화단지 (‘23.7. 지정)	반도체 장비	경기 안성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바이오 원부자재	충북 오송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모빌리티 모터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 1, 2차 산단, 대구국가산업단지
	전력 반도체	부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자율주행 부품	광주	진국일반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결합성을 고려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⁶⁾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⁷⁾,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⁸⁾의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에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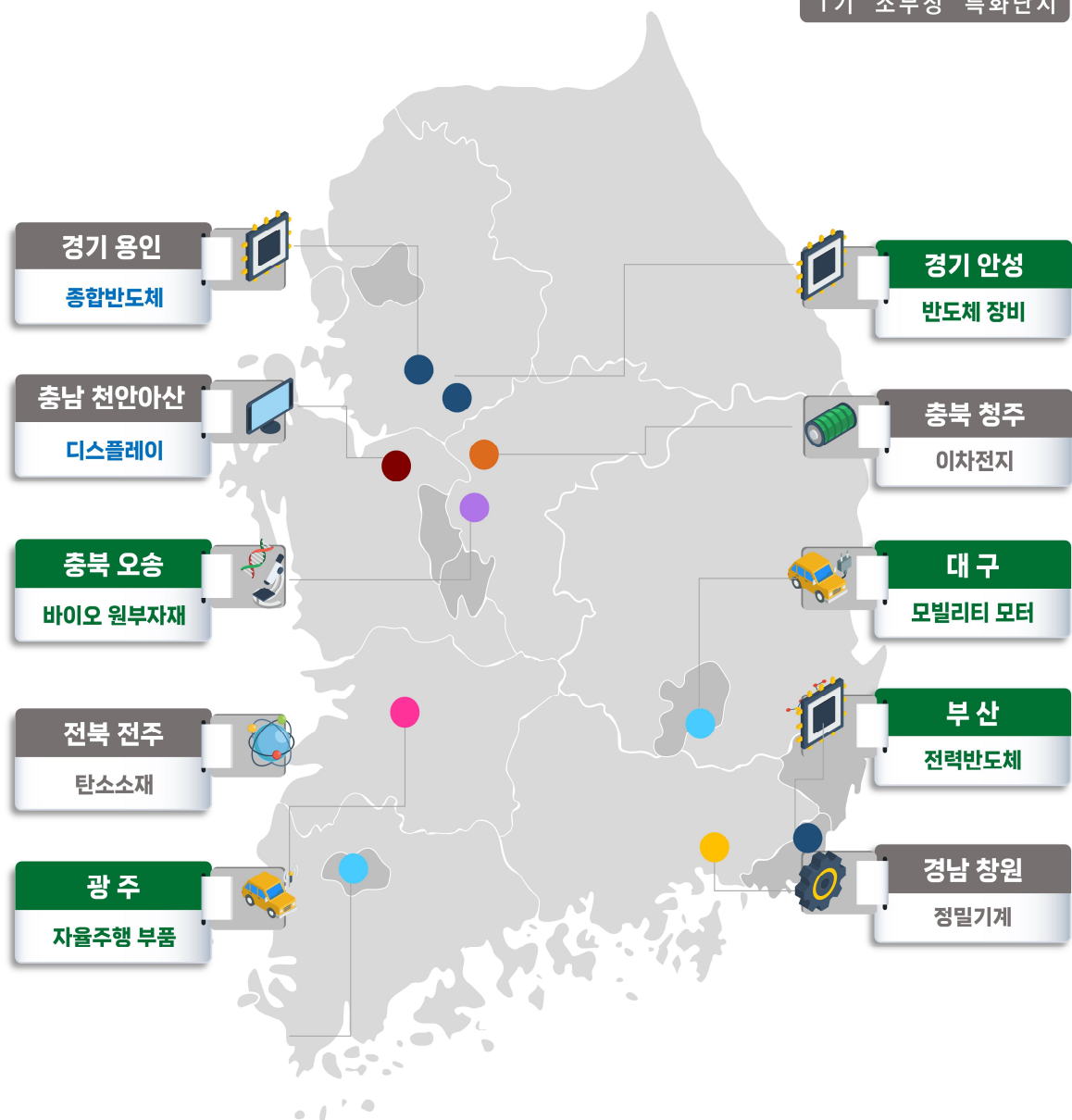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결합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의 범위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소부장 특화단지

2기 소부장 특화단지

1기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4) ● 디스플레이(1) ● 이차전지(4) ● 자동차(2) ● 바이오(1) ● 탄소소재(1) ● 기계(1)

문 의 처
02)6788-5460